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창업 지원 사업 ‘리스타트업’ 참가자 모집공고

기존사업 실패 후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의 재도전 성공을 지원할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 모집공고하오니, 예비재창업자, 기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05일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I 모집개요

- [사업명] 2021년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
- [모집기간] '21년 4월 05일(월) ~ '21년 4월 23일(금) 18:00
- [모집대상] 예비 재창업자 및 초기 재창업자
 - 예비재창업자 : 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재창업자(경상남도 내 창업예정자)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초기재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내 소재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모집규모] 총 10팀 내외 (예비 재창업자 5, 초기 재창업자 5)
- [지원분야] 제조업, IT·SW, 향노화 바이오, 콘텐츠 등 기술창업 분야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지원		▶ 시제품제작·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20백만원)
프로그램 지원	재창업 교육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재창업 특화교육 등 지원
	멘토링·네트워킹	▶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멘토링·네트워킹 지원
인프라 지원		▶ 창업활동을 위한 입주공간 제공

- [주최/주관] 경상남도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II

지원내용

□ 1단계 : 재창업 교육(서면평가 통과 20팀 내외)

구분	소요 시간	수행단계	세부내용	내 용
STEP 1	3시간	고객문제정의	-현재 고객활동 흐름도 작성	- 고객이 제품(서비스)을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느끼는 불편함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정의 함
			-발표/멘토링	
			-고객문제정의	
STEP 2	2시간	아이디어수집	-벤치마킹 및 장점분석	- 다양한 분야의 벤치마킹(자료조사 등)을 통해 고객이 느끼는 문제해결 방안 수집
			-발표/멘토링	
STEP 3	2시간	해결안개발	-벤치마킹 장점을 적용한 사업 흐름도 작성	- 벤치마킹을 통해 찾은 해결안을 적용한 창업자 아이템에 대한 사업 흐름도를 작성
			-발표/멘토링	
STEP 4	3시간	고객반응조사	-전단지(랜딩페이지)만들기	- 잠재고객이 5초 이내에 내용을 이해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랜딩페이지 작성(고객반응조사로 활용)
			-발표/멘토링	
	사후 수행		-고객반응조사	- 랜딩페이지를 활용하여 고객반응조사 및 통계결과 분석

○ 교육 참가자는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해야 최종선정평가의 대상자로 자격 부여

□ 2단계 : 멘토링 및 사업화지원(최종평가 통과 10팀 내외)

내 용	비고
(심화 멘토링)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수요맞춤 사업 고도화 멘토링	팀별 2회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제작비, 홍보비 등	최대 2,000만원

Ⅲ 자격요건

○ '예비 재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21.4.05)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사업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자격검토)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사실확인서류 등 확인
- 협약 종료일 전 경남도내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사업실패(폐업) 후 유망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 폐업기업의 동일한 업종 해당하는 경우 실패원인 및 개선사항 표기해야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 1 참고)

○ '재창업 3년 이내인 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모두 충족해야 함)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8.4.05. 이후 재 창업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모집공고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가 경상남도 이어야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 폐업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함.
- 주력 아이템의 실패·부진을 딛고 매출증대 및 도약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지원)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중인 자 또는 기업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마케팅 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ex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등)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재창업지원사업 기 선정자 또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붙임 2 참고)
- 기타 주관기관 장이 지원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IV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 [추진일정]



□ [평가방법]

① (서류평가) 재창업팀의 의지, 사업성 및 시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③ (발표평가) 재창업팀의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성장 가능성 등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 최종선정

※ 선발일정 및 평가항목(점수)은 변경 될 수 있음.

V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1. 4. 05(월) ~ 4. 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구분	목록	
공통 (예비 재창업자, 기창업자 모두 제출해야함)	참가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첨부파일) ※첨부파일 내 약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필수 확인	발급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등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폐업사실증명원	
예비 재창업자	사업자 등록 여부 사실증명원	
기 재창업자	최근 2개년 재무제표(해당년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선택) 기업 소개 포트폴리오	

□ [문의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 celee@ccei.kr(메일 제목명: 리스타트업 _홍길동)

○ 문의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팀 (055-291-9364)

※ 참가신청서 및 약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VI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가 발생하면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고 추가로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
- 협약 종료 이전, 예비재창업자는 경상남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하며 예비재창업자 및 기창업자는 과제 종료 후 창업기업을 2년 이상 유지해야함.
- 최종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타 사업에 선정되었을 경우 한 개 사업 만 수행가능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 및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등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예비(기)창업자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경상남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발표평가는 예비 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 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산정기준을 반드시 준용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함
- 부적절한 예산 사용(거래처, 예산 범위 초과 사용 등)은 환수할 수 있음
- 중간·최종평가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전,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협약 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의 모든 사업비는 부가세 지원 불가(면세, 간이, 일반과세자 모두 불가)
- 참여자는 교육 및 멘토링 참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미이행시 지원금액 환수 및 추후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2조의2(재창업을 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창업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구분	'09년 ~ '20년(지원(신청)제외 대상 사업)
1	○ 초기창업패키지(舊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2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
3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4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5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6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2016년)
7	○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8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9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3단계)
10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11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12	○ 창업인턴제(사업화)
13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14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15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16	○ 창업도약패키지

* 위 사업에 선정되어 완료한 자(협약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은 본 사업 참여 불가

참고3**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